

검 토 의 견 서

지방의회 ‘청년인턴제도’ 도입 건의안(1611)

- 김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11호, 「지방의회 ‘청년인턴제도’ 도입 건의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 건의안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1/2범위에서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증가와 예산 심사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정책지원관 1인이 의원 2인을 지원하는 현재 체계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.
- 또한, 청년 세대의 정치적 관심 제고 및 청년 세대 실업률 해소 방안으로 청년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 증대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동참하며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는 내용으로
- 의원님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며, 건의안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